
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

2026. 1.



감 사 부

목 차

I. 수립 개요	1
1. 수립 근거	1
2. 수립 목적	1
II. 2025년도 감사 추진 실적	2
1. 자체감사 실시	2
2. 외부감사 수감	4
3. 기타	4
III. 2026년도 감사 계획	5
1. 감사 환경	5
2. 감사 추진 방향	5
IV. 2026년도 감사 세부 추진계획	7
1. 자체감사 추진	7
2. 소통·융합 문화 조성	8
V. 추진일정(안)	9
[붙임] 2026년도 종합감사 계획(안)	10

1. 수립 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, 제34조(감사 계획 협의)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(감사계획의 수립)
- 「감사원법」 제30조의2(자체감사의 지원 등) 제2항
-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「감사규정」 제17조

제17조(감사계획의 수립) ① 감사는 매년 초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 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감사원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정보공유시스템(이하 “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입력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감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감사대상부서, 2. 감사대상업무, 3. 감사반의 구성, 4. 감사방법과 일정
5.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

2. 수립 목적

-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, 잘못된 규정 또는 관행 등을 개선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
- 정부의 주요 시책, 이사회 결정 사항 및 기존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확인·점검하여 원활한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모

II 2025년도 감사 추진 실적

1. 자체감사 실시

□ 일상감사

- (감사방침) 주요업무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·심사하여 사전 예방과 개선에 중점을 두는 서면감사
- (감사범위)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, 계약 및 예산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

<2025년도 일상감사 활동 내역>

감사명	감사기간	감사결과
일상감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본원)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부설)	상시 (’25.1.1.~12.31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상감사 필요 분야에 대해 총 4,869건 실시 (본원 3,773건, 부설 KIRD 1,096건) ○ 일상감사 지적건수 293건 (반려 69건, 의견제시 224건)

□ 종합감사

- (감사방침) 업무전반의 적법성·타당성 점검을 통하여 부정 및 오류를 시정·예방하고, 불합리·비능률적인 업무 개선
- (감사범위) 기관운영, 연구사업, 계약 및 시설운영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 실시(단, 외부기관의 종합감사 수감 시 당해연도 생략 가능)

<2025년도 종합감사 활동 내역>

감사명	감사기간	감사결과
2024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종합감사	’24.11.4.~’25.2.6. (실지감사 : 11.4.~11.8., 감사일수 5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- (감사결과) 처분요구 15건, 현지조치 6건 통보
2025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종합감사	’25.11.10.~’26.1.20. (실지감사 : 11.10.~11.14., 감사일수 5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- (감사결과) 처분요구 12건, 현지조치 4건 통보
2025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종합감사	’25.11.24.~’26.1.20. (실지감사 : 11.24.~11.28., 감사일수 5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- (감사결과) 처분요구 15건, 현지조치 2건 통보

□ 특정감사

- (감사방침) 특정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 마련
- (감사범위)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시, 이사회 또는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,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

<2025년도 특정감사 활동 내역>

감사명	감사기간	감사결과
2025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비 집행 관련 특정감사	'25.11.17.~계속.	○ 특정사업 예산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·집행되었는지 점검 실시(진행중)

□ 공직기강 점검

- (점검기간) '25.1.1. ~ 12.31.
※ 설·추석명절, 하계 휴가철, 연말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포함
- (중점 점검사항) 일상적인 비위점검, 근무상황 관리(출·퇴근 및 무단 근무지 이석, 출장·휴가 등), 유연·재택근무 준수, 보안관리, 비상대비 태세 등을 중점 점검
- (점검결과) 총 144명(주의·경고 58명, 시정 86명)

□ 채용실태 자체 점검

- (점검내용) '24.1.1. ~ 12.31.(1년)까지 기관에서 실시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적정성 여부
- (점검결과)

기관명	점검기간	점검결과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	'25.6.12.~9.26.	○ 적정
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	'25.6.12.~9.26.	○ 적정

2. 외부감사 수감

□ 감사원 「국가R&D 과제선정 및 관리실태」 감사 수감

- (실지감사기간) '23.6.28. ~ '24.3.29.
- (감사대상기관)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연구재단, 정보통신기획평가원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
- (감사결과) 해당사항 없음
 - ※ 감사보고서 「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(혁신·도전형 R&D 사례 분석 중심)」 (감사원, '25.4.30.)

□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실적 심사

- (심사목적)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적용대상기관의 자체감사 활동 및 내부통제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도모
- (심사결과) B등급

3. 기타

□ 제8기 소통 카운슬러 운영

- (구성) 내부 신망이 두터운 직원(비 보직자/연구위원 이하) 7인으로 구성
- (임기) '25.4.1. ~ '26.3.31.(1년)
- (실적) 24건 상담(중복 상담 건수 포함)

<주요 조치사항>

구분	상담 내용	조치 결과
전산관리	○ 전산시스템 점검 시 사전공지된 점검시간 미준수 및 일부 사전공지 누락으로 직원의 불편 초래	○ 전산시스템 점검 시 사전공지된 대로 점검시간 준수 철저 및 중요 전산시스템에는 팝업 안내문 게시 실시('25.6. 완료)
회계관리	○ 업무식비 처리 프로세스 개선 요구	○ 사용자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업무식비 근무확인서 구축을 추진하고자 시스템 개발(진행 중)
연구관리	○ 과제계획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자료 활용 시 불편이 있음	○ 연구계획서의 개인정보 삭제 실시(진행 중)

III 2026년도 감사 계획

1. 감사 환경

□ 대외 환경

- 공공부문 횡령·금품수수 사고 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사전예방·조기적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 강화
-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,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·객관성 확보 노력 요구
-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를 통한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컨설팅 및 감사 관련 애로사항 현장 컨설팅 강화

□ 대내 환경

- 공공기관 혁신 및 효율화가 강조됨에 따라 기관 투명성을 끌어올리고, 기관 경영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엄격한 경영리스크 관리 필요
 - ※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 실적 심사에 기관 차원의 내부통제 지원 분야 강화
- 업무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관 운영상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컨설팅 감사에 대한 필요성 확대
- 대내외 평가를 통해 드러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업무특성별 전략 과제 발굴, 주기적 피드백 제도 마련 등 청렴 수준 개선 노력 강화

2. 감사 추진 방향

□ 컨설팅 중심 선진 감사 지향

- 처분 위주의 사후 적발식 감사보다는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 해소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컨설팅 중심 감사 추진

-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내 규정 해석 및 의견 제시, 단순 지적보다 제도개선 사항 제시 등을 통해 기관 투명성 제고
 - 컨설팅·리스크 예방 차원의 감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, 적발된 비리·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
 - 방만 요소 점검, 청렴 취약분야·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
-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사 요구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사전에 청취하여 감사분야 및 착안사항 발굴
- ① 업무분장표를 기초로 감사분야 유형화, ② 실지감사 2개월 전 요망사항 접수, ③ 수요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착안사항 발굴

분야	감사 착안사항
예산집행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계획의 수립과 연구과제 기획에 관한 사항 · 연구과제의 선정, 평가, 정산, 결산에 관한 사항 ·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· 자금운영 및 회계처리 등 재무적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
방만 경영 예방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직, 인사, 교육, 복리후생 및 급여 제도에 관한 사항 · 구매, 용역, 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 · 정부의 경영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
정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· 경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
□ **소통·융합 문화 조성을 통해 기관의 신뢰도 향상**

- 소통카운슬러 운영을 통해 직원의 애로 및 불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 간 소통 활성화 및 협업문화 조성
- 우리 원의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
-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감사인력의 전문성 강화

1. 자체감사 추진

□ 일상감사

-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·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
- (감사대상)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
- (감사범위/일정) 감사규정 제16조(감사의 종류) 제4항/상시
- (주요 점검사항)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,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, 예산의 목적 외 사용, 방만한 예산 사용 등 점검

□ 종합감사

- 통제위주 및 적발감사를 탈피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 예방감사로의 감사문화 전환을 위해 「컨설팅 중심」의 감사 실시
 - 감사대상 부서의 주기능·주임무 및 조직·인사·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·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
- ※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목적, 감사시기, 감사범위, 감사중점사항 및 감사반의 구성 등을 명백히 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감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

< 2026년도 종합감사 추진계획(안)^{주1)} >

대 상	감사 기간	투입 인원		
		내부감사인	협동감사인 ^{주2)}	총 인원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	'26. 6.1.~ 8.31.	2명	4명	6명
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^{주3)}	'26.11.1.~12.31.	2명	4명	6명

주1) 감사 기간 및 협동감사인 등 투입인원 수 변경 가능

주2) 과기정통부 협동감사제도에 따라 타기관의 감사 경력직원을 협동감사인으로 배정

주3) 부설기관에 별도 감사부서 신설 시 변경 가능

□ 특정감사

-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사회 또는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,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업무·사업·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
- ※ 특정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목적, 감사시기, 감사범위, 감사중점사항 및 감사반의 구성 등을 명백히 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감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

□ 공직기강 점검

-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, 비위 사실,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
- (대상)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전 직원
- (감사범위) 복무의무 위반, 비위 사실 여부, 근무실태 등
- (감사일정) 명절 전후, 휴가철, 연말연시, 민원신고 등 필요시(수시)
- (주요 점검사항) 근태관리 및 문서보안 등 기본적인 복무실태, 민원 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, 업무수행 시 문제점 등 제도 개선

2. 소통·융합 문화 조성

□ 소통 카운슬러 운영

- (관련근거) 감사규정 제10조의2(소통카운슬러의 지정 및 운영)
- 직원의 애로·갈등과 불만사항에 대한 청취·상담·자문 역할 수행
 - 상담내용(근무환경 개선, 갑질·직장내 괴롭힘 등)에 따라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적절한 조치 추진

운영 절차						
내담자	↔	소통 카운슬러	↔	행동강령책임관	↔	원장
(익명성 보장)		(상담내용 보고 및 검토의견 전달)		(필요시 조사·조치 및 보고)		

□ **갑질근절 문화 확산**

-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 대내외 갑질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
 - 규정·요령 등 불공정·불합리한 갑질 유발 요인 제거, 갑질 근절 교육, 갑질 실태조사 실시 등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

□ **감사인 전문성 함양**

- 감사인의 자질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회계·계약, 직무감찰, 감사 기법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감사인력의 전문성 강화

□ **모범사례 발굴·포상 권고**

- 종합감사 수행 시 직무의 효과적 수행, 예산 절감·제도개선 실적이 우수한 모범사례를 발굴·포상 권고하여 사기진작 도모

V 추진일정(안)

구분		추진일정(월)											
		1	2	3	4	5	6	7	8	9	10	11	12
자체 감사 추진	일상감사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종합감사						○	○	○			○	○
	특정감사	사안발생 시											
	공직기강 점검			○			○			○			○
소통· 융합 문화 조성	소통카운셀러 운영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갑질근절 문화 확산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교육훈련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모범사례 발굴						○					○	

※ 상기 감사 일정은 내·외부 상황(외부기관 감사 대응 등)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목 적

- 통제위주 및 적발감사를 탈피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 예방감사로의 감사문화 전환을 위해 「컨설팅 중심」의 감사 실시
- 기획·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규정 준수 및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류의 재발 방지 및 제도상·행정상의 제도 개선
- 자체 감사결과 처분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

□ 주요내용

- (감사기간) KISTEP : '26.6.1.~8.31., KIRD : '26.11.1.~12.31.
- (감사대상부서) 전 부서
- (감사방법) 실사 확인 및 대면 감사
- 감사반 구성
 - (감사반장) 1인(감사부장)
 - (감사반원) 5인(감사분야 경험 있는 내·외부 전문가 활용)
- 감사 중점사항
 - 기관 운영 / 조직 및 직제 / 제 규정
 - 사업계획 및 예산 / 연구·사업 관리
 - 인사, 노무, 교육 관리 / 급여, 복리후생, 기록물 관리
 - 시설·자산 및 안전 관리 / 보안 및 전산시스템 관리
 - 회계, 자금운영 / 수입 및 지출 / 계약·검수 관리
 - 교육·훈련관리 등